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4. 11. 12.

임실군의회회장

1. 제정이유

민선6기 군수공약 사항으로 농업인구의 노령화 영농규모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 기여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 함.

2. 주요내용

- 가. 마을공동급식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본예산 61백만원
- 다. 협 의 : 예산담당 협의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2014.10.15 ~ 2014.11.04)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기획감사실-11262(2014.10.16)비규제
 - (3) 비용추계서 : 불임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
 - (5) 관련법 발췌문 : 불임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영농규모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농번기에 농업인 공동급식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임실군 농업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2.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

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 대표 및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

제4조(지원방법) ①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제3조에 의거 선정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리인력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일수는 각 마을당 30일 이내로 한다.

1. 15명부터 30명까지 1명
2. 30명 이상 2명

제5조(지원 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지원대상자가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9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6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대상 마을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등은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의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임실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신청서

(안 제6조 관련)

1. 신청인(마을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연 락 처 :)

2. 마을 현황

마을명	거주현황		공동급식 참여 인원					
	농가(호)	인원	계	시설·원예	과수	수도작	축산	기타
			명					

※ 참여비율 :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3. 급식계획

- 급 식 장 소 : (위 치 :)
- 조리원 성명 : (연락처 :)

4. 소요사업비 : ○○천원

- 인건비 : ○○천원, 부식 구입비 : ○○천원, 위생장구등 : ○○천원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대상자 명단 1부.

상기와 같이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마을 대표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계획서

(안 제6조 관련)

1. 사업명 :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 . . ~ . . .

○ 급식지원기준일수 : 일

○ 급식기간 : 일부터 일까지(일)

○ 급식기간 : 일부터 일까지(일)

3. 사업자

○ 마을대표 성명 : 전화번호 :

4. 부식 수급계획

조리원 성명	급식기간	부식 구입 계획				
		계	육고기	생선류	채소류	기타
		kg	kg	kg	kg	kg
		kg	kg	kg	kg	kg

- 부식 구입자 성명 : 계좌번호 :

5. 조리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6. 사업비 소요내역

구분	세부내용
인건비	
부식비	
위생장비등	

※ 식재료 자체조달 품목 :

[별표 1]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추진결과

(안 제7조 제2항 관련)

1. 급식개요

- 마을명 :
- 대표자 :
- 급식장소 :
- 급식기간 : ~ (일)
- 급식인원 : 연인원 명(일평균 : 명)

2. 사업비 소요내역

구 분	세 부 내 용
인 건 비	
부 식 비	
위생장비등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붙임 :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일지 ○○부.

상기와 같이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사업 추진결과를 제출합니다.

마을대표 : (인)

임 실 군 수귀하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의 조리원의 인건비, 부식비, 기타잡비
- 관련조문
 -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방법)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마을공동급식의 1개소당 3,050천원 내외 지원

나. 추계 결과

- 2015년도 20개소×3,050천원=61,00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인건비 : 20개소×4.5천원×30일=27,000천원
- 부식비 : 20개소×50천원×30일=30,000천원
- 기타 : 조리원위생복,장갑,칼 등 구입비 20개소×200천원=4,000천원

3. 재원조달 방안

2015년부터 본예산에 반영

4. 작성자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4A전북임실053			
정책명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담당자명	박희율	전화번호	063-640-2412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공동급식이 관례상 여성농업인들이 준비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식사준비는 여성의 담당이라는 고정관념을 지속 재생산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급식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농업인들의 필요에 의한 것임.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농업인으로 수정 필요. ▪ 아울러 관련조항 전체를 문맥에 맞게 수정 필요. 			
검토의견 반영 결과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이 조례는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3조 및 제11조 5항에 의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한 조례임			
2014년 11월 05일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및 제11조5항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